

2018년 의료자원 현황관리 가이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

Contents

2018년 의료자원 현황관리 가이드

I. 보건의료자원 현황 및 변경신고 안내..... 3

1. 보건의료자원이란?.....4
2. 보건의료자원 신고 관련 근거.....4
3. 신고경로.....4
4. 시설현황.....5
5. 인력현황.....6
6. 장비현황.....7
7. 식대·차등제.....8
8. 수면다원검사 실시기관 현황신고.....9
9.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현황신고..... 10

II. Q & A 11



- 정확하게 신고 된 의료자원 현황은 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의 행정 부담을 감소시켜 정확하고 빠른 업무처리로 요양급여비용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 이 안내서는 의료자원 현황신고 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의에 대한 기준 및 사례 등을 발췌하여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만들었습니다.
- 요양기관의 담당자들께서는 적용기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정확한 현황정보가 유지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2018년 의료자원 현황관리 가이드 |

보건의료자원 현황 및 변경신고 안내





1 보건의료자원이란?

요양급여와 관련된 요양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말함

2 보건의료자원 신고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제1항, 제2항, 119조(과태료) 제4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82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별표7

» 주요내용

- 요양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
-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15일 내에 변경 신고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신고경로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현황신고·
변경



4

시설현황

» 지방자치단체 시설 신고

- 허가병상(일반입원실,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 병실, 무균치료실),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물리치료실, 임상검사실, 조제실, 탕전실

» 심사평가원 시설 신고(상세 신고)

- 허가병상 상세내역(상급·일반, 인실별, 성인소아·신생아), 분만실, 신생아실, 인공신장실, 강내치료실, 방사선옥소, 낮병동, 조혈모처치실, 혈액은행, 모자동실
- ※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병상 신고 후 반드시 심사평가원에 상세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 차등제 운영병상 신고(차등제 운영 기관만 해당)

- 일반병동, 폐쇄병동, 중환자실, 외래 등



5

인력현황

» 인력 상세 신고

- 의(약)사: 개설자 및 봉직의(약)사, 상근/비상근/기타 형태로 신고
 - 상근: 주5일 이상, 주40시간 이상
 - 비상근: 주3일 이상, 주20시간 이상
 - 기타: 주20시간 미만 근무자 및 후입사 근무자
- 간호인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 1개월 이상 연속 부재 시 반드시 신고 (무급일 경우 1개월 이하일지라도 신고)
- 물리치료사
 - 상근: 주5일 이상, 주40시간 이상(1인 인정)
 - 비상근: 주3일 이상 주20시간 이상(0.5인 인정)
- 의료기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 주5일 이상, 주40시간 이상인 경우 인정

» 인원 수 현황신고

- 차등제 미적용 기관의 경우 상근/비상근/기타, 정규직/비정규직 관계없이 실제 근무하는 인원 수 현황을 신고
- 인원 수 관리 대상
 -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위생)사, 의무기록사, 동위원소취급자(일반·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조산사 등



6

장비현황

» 지방자치단체 신고 장비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 의료장비

» 심사평가원 신고 장비

- 일반장비

※ 공통제출서류

1. 구입증빙자료(세금계산서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2.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 구입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 무상양도 등 기증관련 자료 및 중고장비 구입·구매계약서 제출
- 장비이전 없이 A기관에서 B기관으로 인수된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등과 의료장비현황(변경)신고서에 작성한 장비 목록 제출
- 오래 전 구입한 장비의 경우 장비설치 사진과 의료장비현황(변경)신고서에 작성한 장비 목록 제출



7

식대·차등제

※ 신고기간: 매분기 마지막 월 16일~20일

차등제 및 가산관리료	대상 현황	기한 내 미제출시 적용기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병상수, 간호사수	7등급 (의원급 6등급)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병상수, 간호사수	산정 불가 (해당 분기만 미제출시 중환자실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전분기와 변동이 없는 경우 최저등급 산정)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입원환자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인력	G5
요양병원 입원료	간호인력, 환자수, 의사, 필요인력(약사, 의료기사 등)	의사 5등급 간호인력 8등급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병상수, 간호사수	산정 불가
감염예방·관리료	병상수, 간호사수	산정 불가
치료식 영양관리료	환자수, 영양사수	산정 불가



8

수면다원검사 실시기관 현황신고

» 관련근거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 행위 제2장 검사료 세부기준. 나-629 수면다원검사(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35호, 2018.7.1. 시행)

» 인력신고

- 신고대상: 수면다원검사(인증, 또는 예비인증) 교육이수자

※ 예비 인증

: 고시 3개월 이전 수면다원검사를 시작한 경우 예비 인증함.
고시 후 3년 이내에 수면다원검사 인정기준을 이행하여야 함. 불이행 시 예비인증 취소

- 신고경로: 자격등록 → 수면다원검사인증 신고 항목 → 「이수시간 추가」 클릭 → 교육이수종별 선택
- 신고내용: 교육이수일자, 적용시작일자, 적용종료일자

※ 첨부자료

- 수면다원검사(인증 또는 예비인증) 교육 이수증 사본

» 기관신고

- 신고대상: 수면다원검사 실시기관
- 신고경로: 특수운영현황 → 수면다원검사 실시기관
- 신고내용: 적용일자(수면다원검사 인증 의사 적용시작일 이전 신고 불가)

※ 첨부자료

- 환자별 독립된 공간 수면다원검사실 사진 파일

※ 인력 신고 등록 후 기관 신고 가능



9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현황신고

» 관련근거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14호, 2018.8.1. 시행)

» 병문안 관리 규정 충족 기준

1.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기관장 결재를 마친 규정
2.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병문안 허용시간대, 병문안 제한 대상, 병문안객 관리대상 양식 및 운영방법, 반입금지 물품 목록, 병문안 관리 방법
3.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규정 전문을 제출

» 병문안 관리 방법 충족 기준

- ※ 병문안객 관리를 위한 시설, 인력, 기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운영해야 함
1. 시설: ID카드 등을 이용하여 허용된 사람에 한해 개폐가 가능한 고정시설물, 건물별 1개 이상 설치 도면이나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함
 2. 인력: 규정에 정해진 시간 동안 병문안객 관리를 전담하는 사람(단순 안내요원 및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 기관별 1명 이상 배치 근로계약서, 근무대장 등을 제출해야 함
 3. 기타: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지만 병문안객 관리가 가능한 방법을 의미

| 2018년 의료자원 현황관리 가이드 |

Q & A





Q

2018년 의료자원 현황관리 가이드

호스피스 병상 신고 중 일반입원실(상급)의 호스피스 1인과 일반입원실(일반) 호스피스 1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병원급 이상 기관은 일반입원실(상급)의 1인, 의원급 기관은 일반입원실(일반)의 1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단, 임종실의 경우 허가병상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종별에 상관없이 일반입원실(일반) 호스피스 1인에 신고해야 합니다.(임종실이 허가병상 수에 미 포함된 경우 신고하지 않음)





Q

2018년 의료자원 현황관리 가이드

바코드 라벨 온라인 발급 대상 장비가 무엇인가요?

A

2018년 7월 이후 신고(등록) 장비부터 CT 등 바코드 발급 대상 장비 23종에 대해 바코드 라벨 온라인 출력이 가능합니다.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정보마당 → 마이 페이지 → 증명서 발급 → 장비 바코드 → 바코드 출력

바코드 발급 대상 장비 23종

일반엑스선촬영장치, 엑스선촬영·투시장치,
치과용방사선촬영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유방촬영용장치, C-Arm형 엑스선장치, 혈관조영촬영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콘빔CT, 양전자단층촬영장치,
감마카메라, 골밀도 검사기, 자기공명영상진단기,
초음파영상진단기, 선형가속기, 후장전치료기, 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토모테라피, 중성자치료기, 양성자치료기,
혈액방사선조사기, 체외충격파쇄석기



Q

2018년 의료자원 현황관리 가이드

취하/취소된 장비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취하된 장비는 업체의 개인적인 사유(업체의 제조공정 문제, 재정 문제 등)로 제조, 수입, 판매 등을 중지하고 식약처에 받은 허가를 반납하는 경우로 장비 안정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요양기관에서의 장비 신고 및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취소된 장비는 장비 안정성의 문제나 장비 재평가 미실시, GMP 갱신심사 미실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 취소사유에 대한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경우 본원 의료장비 기능분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MP란? 의약품 등의 제조 품질 관리에 관한 규칙



Q

2018년 의료자원 현황관리 가이드

치료식 영양관리료에서 ‘1인당 1일 40명 이하의 환자에게 치료식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A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전분기 현황을 토대로 전분기 말에 신고하여 당 분기에 산정여부를 적용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1인당 1일 40명 이하의 환자’라는 개념은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의 치료식을 제공한 환자수의 합과 영양사의 동 기간 동안 재직일수*를 나눈 수치를 의미합니다.

* 재직일수에 공휴일을 포함, 16일 이상 연속적 부재 시 그 기간만큼 재직일수에서 제외합니다.



Q

2018년 의료자원 현황관리 가이드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에서 2인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전분기 3개월 평균 2인 이상의 야간전담 간호사가 근무하여야 하며, 해당 2인이 전분기의 첫 달 15일 이전까지 야간전담 간호사 인력산정기준인 '1개월 이상 야간전담 간호사'로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야간전담 간호사 최초 산정분기는 산정 불가능합니다.



Q

2018년 의료자원 현황관리 가이드

교육·상담료 청구를 위하여 임상영양사를 신고하려 하는데, 입원환자 식대 인력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입원환자 식대 담당 인력은 입원환자 식대 제공 업무와 관련된 인력만을 신고합니다.
따라서, 해당 인력은 입원환자식 인력으로서의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Q

2018년 의료자원 현황관리 가이드

중환자실 운영 중 새로운 Unit을 만드는 경우 전담 (전문)의 가산수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A

신설 Unit의 경우 신설 당분기 가산수가를 산정할 수 없으며, 차기분기의 경우 신설 Unit 운영일부터 당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재직일수 기준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월 15일 이후 신설 Unit은 차기분기도 가산 미적용)



Q

2018년 의료자원 현황관리 가이드

환자안전관리로 미신고(미청구) 기관에서 중환자실 차등제 산정 간호사가 환자안전업무를 병행할 수 있나요?

A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환자실 차등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

2018년 의료자원 현황관리 가이드

‘18년 6월 시행된 한방병원 수가개편과 관련하여,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종별가산율이 변경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종별가산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8개 진료과목을 모두 설치하고 각 진료과목별 한방전문의를 충족하는 한의과대학부속 한방병원에 한해 30%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목 또는 전문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시정기간 내 미충족시에는 인력변경일(결원발생일)기준 3개월이 초과된 익일부터 종별가산율을 인하·적용합니다.

(‘18년 6월부터 변경기준 적용)



Q

2018년 의료자원 현황관리 가이드

통합신고포털에서 물리치료사 신규 신고 시 입력화면에서 인력종별에 물리치료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A

요양기관 현황에 물리치료실 병실 또는 병상이 신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물리치료사 신규 입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실 병실·병상 신고 후에 인력신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등제 신고 안내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



식대·차등제



차등제 신고
(또는 치료식영양관리료 신고)

일정표

2018년 9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18년 12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19년 3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19년 6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19년 9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19년 12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부패·청탁금지법위반 신고 안전하게 보호해드립니다.

부패행위란?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2.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1, 2와 같은 행위나 은폐를 강요·권고·유인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란?

1.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2. 공직자 및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3. 그 밖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방법

인 터 넷 1398.acrc.go.kr

팩 스 044-200-7972

우편·방문 (0374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